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전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새롭게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률”이라 한다)」이 일부개정(법률 제20849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 / 법률 제20514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실제 제도 운영에 맞도록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안 제40조 제목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

- 1)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종전의 기상정보관리체계가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됨.

2)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동 관리체계의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함.

나.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40조제3항 삭제, 안 제40조의2 신설, 안 제4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개정)

1)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폭염·홍수·가뭄 예측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등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따라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와 더불어 동 통합플랫폼을 환경부 장관이 구축·운영하기 위한 근거와 동 플랫폼 등에서 관리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내용 등에 관해 규정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통계 제출에 관한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근거 현실화 (안 제73조제4항 및 제5항, 안 제73조제6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안 제74조제10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3항, 안 제74조제16항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소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과 관련한 권한·업무를 외청(外廳), 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미비점이 있음.

2) 이에 시행령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업무에 대한 위임·위탁 대상 기관을 실제 제도 운영에 맞게 현실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을 “(기후위기의 감시·예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한다.

1. 법 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라 한다)의 표준 설정·관리 방안
2. 기후위기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활용 방안
3. 기후위기에 대한 조사·분석·예측·평가 방법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효과 평가
 5.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 간의 기후
위기적응정보 공유·연계 및 협의 방안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
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1. 기후위기적응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2. 기후위기적응정보의 저장체계 및 품질관리
 3. 기후위기적응정보의 보안 및 오용·남용 방지 방안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
플랫폼에서 다음 각 호의 기후위기적응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생산
·관리·활용한다.
1. 폭염·홍수·가뭄·태풍·한파·폭설 등 기후위기 요소에 관한 관
측·측정·분석 자료
 2.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취약성·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에 관한 예측·조사·평가 자료
 3. 기후위기 적응역량 및 회복력 제고에 관한 자료

4.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통계 및 지리정보(좌표 또는 주소를 포함한다)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
 6.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점검 결과 보고서,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점검 결과 보고서 및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이행실적
 7.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한 기후재난 등의 원인조사 결과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안전점검·진단 결과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정보를 제공

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 체계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제4호 중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7조제3항”을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제73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산림 분야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농업·축산 분야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항제4호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4조제10항 중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위한 자료의 검토·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2. 제39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산업공정 분야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2호에

다른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9호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위탁한다.

⑯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제39조제8항제4호의 건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9호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2. 제39조제8항제4호의 정주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제39조제8항제4호의 교통(해운·항만은 제외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항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2025년 9월 26일
2. 제40조제3항, 제40조의2, 제41조제1항 및 제4항, 제43조제1항, 제44

조제1항, 제4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 2025년 10월 23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생 락)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②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u>기상정보관리체계</u> 를 구축·운영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원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u>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u> 를 구축·운영한다.	② ----- ----- <u>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라 한다)</u>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u>기상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u> 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삭 제>
<신 설>	④ ----- <u>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u> --- ----- ----- ----- ----- -----.
	제40조의2(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u>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u>

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한다.

1. 법 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이하 “기
후위기적응정보”라 한다)의
표준 설정·관리 방안

2. 기후위기적응정보의 수집·
생산·관리·활용 방안

3. 기후위기에 대한 조사·분석
·예측·평가 방법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효과 평가

5.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
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
간의 기후위기적응정보 공유
·연계 및 협의 방안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후
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7조제3
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
합플랫폼(이하 “기후위기적응
정보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1. 기후위기적응정보의 공개 범
위 및 방법

2. 기후위기적응정보의 저장체
계 및 품질관리

3. 기후위기적응정보의 보안 및
오용·남용 방지 방안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후
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
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적응
정보통합플랫폼에서 다음 각 호
의 기후위기적응정보를 중점적
으로 수집·생산·관리·활용
한다.

1. 폭염·홍수·가뭄·태풍·한
파·폭설 등 기후위기 요소에
관한 관측·측정·분석 자료

2.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취약
성·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예측·조사
·평가 자료

3. 기후위기 적응역량 및 회복
력 제고에 관한 자료

4.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통

계 및 지리정보(좌표 또는 주소 포함한다)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

6.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점검 결과 보고서,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점검 결과 보고서 및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이행실적

7.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제41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u>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u>	<u>이 공개한 기후재난 등의 원인조사 결과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안전점검·진단 결과</u> 8. 그 밖에 <u>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u> ④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u> 제41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 기후위기적응대책-----
--	--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⑤·⑥ (생략)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

⑤·⑥ (현행과 같음)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

---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

-----.

② ~ ⑥ (생략)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및 이행 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 ⑦ (생략)

제47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①·② (생략)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3. (생략)

4.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사업

5.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지원 사업

6. (생략)

④ ~ ⑨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① -----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5. 법 제37조제4항-----

6.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 ③ (생략)

<신 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81조제1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농업·축산 분야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산림 분야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

⑦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항제4호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제74조(업무의 위탁) ① ~ ⑨ (생략)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81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업·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신 설>

<신 설>

⑪ · ⑫ (생략)

<신 설>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4조(업무의 위탁)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다음 각 호의

-----.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위한 자료의 검토·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2. 제39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산업공정 분야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⑪ · ⑫ (현행과 같음)

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⑬ · ⑭ (생략)

<신설>

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8항 제2호에 따른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9호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위탁한다.

⑭ · ⑮ (현행 제13항 및 제14항과 같음)

⑯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제39조제8항제4호의 건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9호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2. 제39조제8항제4호의 정주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⑮ ~ ⑰ (생략)	3. 제39조제8항제4호의 교통(해운·항만은 제외한다): 「<u>한국교통안전공단법</u>」에 따른 <u>한국교통안전공단</u> ⑰ ~ ⑲ (현행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기후전략과	
연 락 처	(044) 201 - 6652